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골드플러스연금보험

2. 보험의 구성

보험의 세목	생존연금 지급형태		
적립형	종신연금	종신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종신연금 보증금액부	
거치형	종신연금	종신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종신연금 보증금액부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즉시형	종신연금	종신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확정연금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3.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보험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구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Y)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나이	
적립형	5년	10만원 이상	만15세 ~ (Y - 12)세	45세 ~ 70세
	7년	10만원 이상	만15세 ~ (Y - 12)세	
	10년	5만원 이상	만15세 ~ (Y - 15)세	
	11년~전기납 (Y세납)	10만원 이상	만15세 ~ (Y - 12)세	
거치형	일시납	1,000만원	만15세 ~ (Y - 5)세	45세 ~ 75세
즉시형		이상	45세 ~ 75세	

(주)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

4. 보험기간

구분	적립형, 거치형	즉시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상속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5. 보험료 납입주기

가. 기본보험료

- (1) 적립형 : 월납
- (2) 거치형, 즉시형 : 일시납

나. 추가보험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납(적립형, 거치형)

6.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이 없음

## 7. 납입보험료의 한도

### 가. 기본보험료

가입나이별로 상이하며 3호의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보험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참조

### 나. 추가보험료

(1) 추가보험료의 총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이내로 한다.

(2) 연간(보험년도 기준)납입 한도

(가) 적립형 : 연간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이내

(나) 거치형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 이내

(3) 추가보험료는 매회 5만원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 8.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가. 적립형과 거치형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마.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시이율 계산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3)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범위 내에서 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A.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 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 비용
- A<sub>12</sub>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sub>0</sub>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B.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B<sub>i</sub>)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sub>i</sub>(-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i(-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i(-1) :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4) (2)호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2)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5)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6)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한다.
- (7)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 10. 기타

### 가. 고액보험료 할인(적립형에 한함)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할 수 있다.

(단, 기본보험료 99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 나. 추가보험료에 관한 사항

적립형 및 거치형의 추가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부리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연금 지급 개시시에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라. 선납보험료

- (1)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바. 이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사.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적립형 : 기본보험료 × 12 × MIN [ 납입기간, 10 ]

(2) 거치형, 즉시형 : 일시납보험료

단, 즉시형의 보장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일시납 보험료의 15%로 한다.

아. 연금지급형태의 복수선택

(1) 거치형에 한하여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의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3) 제(1)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은 연금개시시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10% 단위)로 선택하여야 한다.

자.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